

충청북도바이오농업·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3년 4월 1일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4월 1일

3. 제안 이유

- 농산물 시장개방 및 경쟁의 가속화로 지역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첨단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
- 농업분야에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농업·농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4. 주요 골자

- 바이오농업·농기업의 육성목표와 전략, 기본방향, 중·장기 추진계획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(제3조)
- 바이오농업·농기업에 대한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, 신기술 개발 및 보급, 충북 고유브랜드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(제4조)

- 충청북도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제5조~제10조)
- 바이오농업의 육성·발전과 관련하여 발명·연구·개발·응용 등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및 해외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제12조)

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바이오농업·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의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바이오농업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나
- 제3조의 바이오농업·농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중·장기 추진계획의 계획수립 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제6조의 위원회 구성 중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명시되었으나, 해촉 사유 및 문제 발생시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촉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

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관기관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10조 다음에 제11조 삽입	제11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제11조(수당 및 여비)	제12조(수당 및 여비)
제12조(포상 등)	제13조(포상 등)
제13조(시행규칙)	제14조(시행규칙)